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28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박 정·김정호·송옥주

강유정 • 부승찬 • 김현정

황정아 · 소병훈 · 박홍배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토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산지 등에 설치를 확대할 경우, 산림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

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편 농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 및 사용대차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이란 농업인이 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진 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그 농지의 일부(상부를 포함한다)에 태양 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 및 사용대차인은 농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이
	<u>란 농업인이 제1호가목에 따</u>
	른 농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u>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u>
	배하면서 그 농지에서 태양광
	<u>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u>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
	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
	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영
	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	허가 등)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	
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_	_	 	_	-	-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그 농지의 일부(상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

및 사용대차인은 농지소유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